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 안 번호 343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문금주·주철현·박민규

김원이 · 이개호 · 박희승

권향엽 · 김문수 · 박지원

황정아 · 임미애 · 신정훈

이훈기 • 서삼석 • 정성호

조계원 • 백승아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 (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남특별자치도(이하 "전남자 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남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전남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남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⑤ 국가는 낙후된 전남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 는 전남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전남자치도의 책무) ①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에 대한 국가정 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전남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자치도의 조례 (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등의 결과가 전남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남자치도의 조직 · 운영,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남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남특별자치도 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 제6조(전남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 치한다.
 - ② 전남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전남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7조(전남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남자 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남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남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남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전남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 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

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 용한다.
- ①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 령을 적용한다.
-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에 전남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 을 적용한다.
-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남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남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수 있다.

- 1. 전남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전남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4. 전남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5. 신ㆍ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6. 무안국제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
- 7.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1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남자치도를 국 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남자 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남자치도는 지방소멸 극복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전남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 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행정의 확대

-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수 있다.
- 제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남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남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가와 전남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 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남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 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 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

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제21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남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전남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남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전남자치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별표 제

2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3편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활력증진 기반 조성 제1장 지방소멸극복 종합계획

- 제22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 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전남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멸 극복과 미래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사항
 - 5.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 6.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 7.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8.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9.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10.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11. 자연생태·생명·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12.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3. 해양의 이용 ·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14.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15.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6.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 17.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전남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한다.
-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 다.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자치도에 지방소멸 극복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 · 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2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1절 생활인구 유입·확대

- 제25조(저출생 대책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가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저출 생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출산 장려,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지 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시행에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전남특별자치도 체류자격)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남자 치도 내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7조(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남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등록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부모의 활동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28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

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 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 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 ⑧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농산어촌 활력 촉진

- 제29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종합계획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 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지사는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30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 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 ②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는 전남자치도의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는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해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①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에서는 전남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가 전남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공공기관 및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어촌·어항법상의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3절 글로벌 문화・관광거점 조성

제33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전남자치도

- 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대규 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4조(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①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전남자치도 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 ②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36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 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7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 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 러 이상일 것
-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 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 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제1항 각 호 외 도지사가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편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 기반 조성 제1장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제38조(전기사업에 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 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9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집적화단 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 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 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이하 "영농형 태양 광" 이라 한다)하는 사업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농형 태양 광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집적화단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2. 제1호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법인
 -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 이라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며,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모든 농지에 허가기간은 2 3년 이상으로 한다)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 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도 설치의 인가
- 6.「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④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농지의 소유자가 집적화단지가 조성된 농지에「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⑥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 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⑧ 집적화단지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특례) 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의 권한 중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1. 발전용량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 2. 두 개 이상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설치, 지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한다.

제2장 첨단전략산업 육성

- 제42조(첨단전략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도 내 첨단전략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분야에 대한 필요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산업
 - 2. 드론, 미래비행체 등 항공산업
 -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
 - 4. 전기차, 수소차 등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 5. 차세대 백신, 면역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산업
 - 6. 화합물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산업
 - 7. 인공지능 및 데이터산업
 - 8. 그 외 국가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특화 육 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 분야
 - ② 국가 및 전남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3조(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산업 육성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

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 ⑥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소재· 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남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5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 조성·운 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특례)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한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 제3호의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제1호, 제2호, 제4호의 특구·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2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촌활력촉진특구
- 2. 제3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 3. 제43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4. 제4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진흥지구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

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4항,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4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47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6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제9항, 제7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제6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5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0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47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 운영

- 제49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남자치도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전남 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 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
 -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비
 -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 의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51조(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전남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 제53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투자진흥지구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54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제55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 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 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 등"이라 한다)을 수의(隨 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남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38조
-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7조를 준용한다.

-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제4장 공항ㆍ항만 경쟁력 확보

- 제57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8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가, 전남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남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남자치도가 세계적인 물류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전남자치도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0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남자치도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 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물류특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특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도지사는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도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시·도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해 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국제물류특구 지정·변경· 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60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 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 제62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 ②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 ③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63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 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남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

- 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한다.
- ②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수 있다.

제5장 토지의 효율적 활용

제64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 2. 부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 제65조(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3, 제16조의4,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청의 권한 중 전남특별자치도관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관리계획 등 전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이에 따른 전남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편 보칙

제66조(해외협력) 전남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

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 류할 수 있다.

- 제67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남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 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2.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3. 제69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69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인가 · 승인 · 허가 ·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 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0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1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 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 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제6편 벌칙

- 제73조(과태료) ①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남도 폐지) 종전의 전라남도를 폐지한다.

-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라남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4조(전라남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도지사 (전남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 제5조(종전의 전라남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 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 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남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남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새로 위촉 ·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의 사무와 전라남도지사나 그소속 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남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남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해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남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남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남자치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가 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남자치도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